

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

1. 장기요양기관서비스 이용자 모집방법 및 이용절차

▲ 등급판정신청절차

① 신청(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) → ② 방문조사(공단직원) → ③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(등급판정위원회) → ④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(장기요양센터) → ⑤ 서비스 이용(장기요양기관)

▲ 이용자 모집 방법 및 재가기관 이용절차

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

첫째: ① 이용 상담 (전화 혹은 내방) → ②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→ ③ 접수 및 이용계약서작성 → ④서비스 실시

둘째: 인터넷(온라인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사이트, 블로그)을 이용한 홍보 모집한다.

셋째: 재활병원, 경로당, 지인 소개 및 홍보지 등을 급여종류별로 홍보 모집한다.

2. 방문요양 이용절차

▲ 이용절차

① 신청접수 → ②사전방문 → ③사정회의 → ④서비스 계약체결 → ⑤서비스 제공 → ⑥사후관리

1. 신청접수 :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/ 건강관리공단, 구청,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-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

2. 사전방문 :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(건강상태, 개인신상, 주거환경, 서비스 제공여부 등)

3. 사정회의 :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, 1일 서비스 제공기간, 일정 등을 결정한다.

4. 서비스 계약체결 :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,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.

※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※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5. 서비스 제공 : 가정방문(방문요양)

6. 사후관리 :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,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 체크